

노재보험 청구를 위한 가이드북 < 제1편 >

청구(신청)할 수 있는 보험급부 등

노재 보험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가진 분은 물론 유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등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 북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재보험을 받을수 있는 급부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해설 한 것입니다.

지급요건 등 상세사항은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 해 주세요. 또 본국으로 귀국 하면 받을 수 없는 급부도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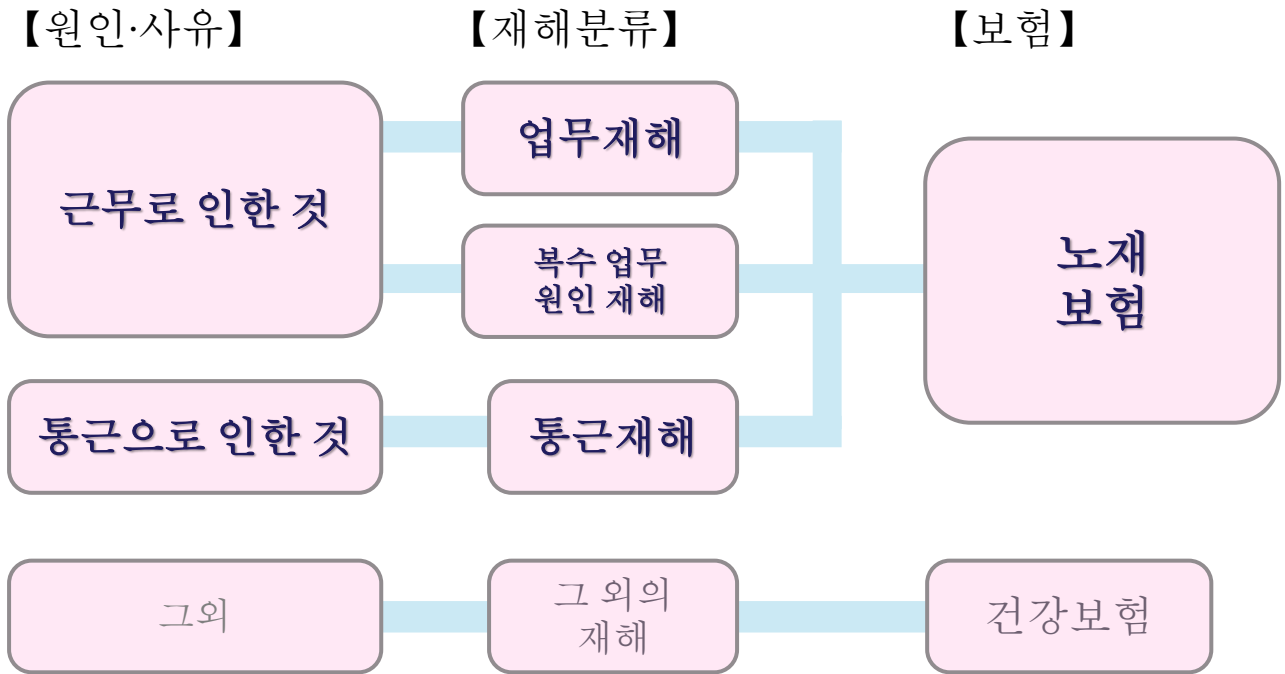
【목차】

- 일이나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난 경우 • P3
- 일이나 통근이 원인으로 친족이 사망한 경우 P7
- 이미 노재 보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P10
- 그 외 P14
-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의 주의사항 P16



노재 보험이란

노재 보험이란 노동자가 일 (업무)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때에 치료비 등 필요한 보험 급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일본 국내에서 취로하는 이상 노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동재해에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제2편

- 업무 재해 → P3에
- 복수 업무 원인 재해 → P5에

노재보험 급부의 종류

- ◆ 요양(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의 원인으로 얻은 병의 요양을 위하여 받는 급부
- ◆ 휴업(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의 원인으로 얻은 병의 요양을 위해 일을 할 수 없어 봉급을 받을 수 없을 때의 급부
- ◆ 상병(보상) 등 연금: 업무 또는 통근의 원인으로 병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 병이 치유(증상 고정)되지 않아 장애의 정도가 병의 등급에 해당될 때의 급부
- ◆ 장애(보상) 등 급부: 업무 또는 통근의 원인으로 얻은 병이 치유(증상 고정)되어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장애가 남았을 때의 급부
- ◆ 유족(보상) 등 급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급부
- ◆ 상제료 등(상제 급부): 노동자가 사망하여 상제를 진행할 때의 급부
- ◆ 개호(보상) 등 급부: 장애(보상) 등 연금 또는 상병(보상) 등 연금의 수급자 중, 일정한 장애로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을 때의 급부

일이나 통근이 원인으로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Q. 일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병)에 걸려버린 경우 병원에서의 요양 비용(치료비)은 노재 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까?



- ① 노재병원 등의 노재지정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부득이하게 지정 의료기관 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치료비를 부담하시지만 나중에 청구하면 부담한 비용 전액이 지급됩니다.
- ③ 통원하기 위해서 든 교통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전액이 지급됩니다.

요양 급부, 요양 비용의 지급

< 청구 방법>

- ① 의 경우: 본인이 지정 의료기관을 거쳐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 해 주세요.
- ② 의 경우: 본인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 해 주세요.

<유의점>

- ①②모두 상병이 치유(증상 고정)될 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 의료비용을 지출한 날별로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다음날로부터 2년
(①에 관해서는 시효가 없습니다.)

통원비

<지급 내용>

통원에 필요한 비용의 실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다음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① 노동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로부터 원칙적으로 편도 2km 이상의 통원일 것
- ② 노동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동일 지역에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에 통원한 경우일 것
(예외로써 동일 지역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등에도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방법>

본인이 직접 노동기준 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비용을 지출한 날별로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다음날로부터 2년

【상세사항은】 제2편 • 요양(보상) 등 급부·요양비용의 급부 → P14에
• 요양(보상) 등 급부·요양비용의 청구서 → P37에

상처나 병 치료를 받을 경우의 급부 수속

노동재해 발생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진※1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 수진※3

사업주로부터 청구서
※2에 증명을 받는다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 지불

사업주·의료기관으로부터
※4 청구서에 증명을 받는다

지정 의료기관에
청구서※2 제출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4 제출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청구서를 접수

영수증 등 비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필요에 따라 청구인
및 관계자의 서류
제출이나 청취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지정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의 지불

지정된 청구인의 이체
계좌에 지불

청구 접수로부터 급부 결정
까지의 기간은 대략 1개월이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이
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요양에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4 요양비용 청구서
(업무재해,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의 경우에는 양식 제7호
통근재해의 경우에는
양식16호의5)

※1 부상 등에 관련된 치료를 현물(무료)로
지급합니다.

※2 요양의 급부 청구서
(업무재해,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의
경우에는 양식 제5호
통근재해의 경우에는 양식16호의 3)

통근재해의 경우에는 청구서 외에 양식 제16호(별지)
「통근재해에 관한 사항」 제출이 필요 합니다.

Q. 작업중의 사고에 의한 부상 치료를 위해 회사를 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양을 위해서 일을 쉬고,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휴업(보상) 등 급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언제부터 ... 휴업 후 4일째 부터
- 얼마 ... 하루에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80%
(보험 급부60%+특별지급금액 20%)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은 원인이 된 사고 직전 3개월분의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 (평균임금)입니다.

(예1) 월 20만 엔의 임금(임금 마지막 날은 매월 말)으로 10월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20\text{만엔} \times 3\text{개월} \div 92\text{일} [7\text{월}(31\text{일}) + 8\text{월}(31\text{일}) + 9\text{월}(30\text{일})] \approx 6,522\text{엔}$
 $6,522\text{엔} \times 80\% \approx 5,217\text{엔}$
→ 휴업 1일마다 급부 기초 일당금액 80%인 5,217엔이 지급 됩니다.

(예2) 회사 A와 회사 B, 2개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 A에서 월 20만엔, 회사 B에서 월 10만엔의 임금(임금마감일은 A, B 모두 매월 말)을 받으며, 7월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회사 A의 급부 기초 일액
 $(20\text{만엔}) \times 3\text{개월} \div 91\text{일} [4\text{월}(30\text{일}) + 5\text{월}(31\text{일}) + 6\text{월}(30\text{일})]$
 $= 6,593.40\text{엔}$

회사 B의 급부 기초 일액
 $(10\text{만엔}) \times 3\text{개월} \div 91\text{일} [4\text{월}(30\text{일}) + 5\text{월}(31\text{일}) + 6\text{월}(30\text{일})]$
 $= 3,296.70\text{엔}$

$6,593.40\text{엔} + 3,296.70\text{엔} \approx 9,891\text{엔}$

$9,891\text{엔} \times 80\% \approx 7,912\text{엔}$

→ 휴업 1일마다 각 취업장의 급부 기초 일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80%인 7,912엔이 지급됩니다.

휴업(보상) 등 급부

<지급요건>

- ①~③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일 것
- ② 노동을 할 수가 없을 것
- ③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지급내용>

휴업일 4일째부터 휴업 1일당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80%(보험 급부 60%+특별 지급금 20%)가 지급됩니다. 또한, 복수 사업 노동자인 경우에는 복수 취업장의 급부 기초 일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80%(보험 급부 60%+특별 지급금 20%)가 지급됩니다.

<청구방법>

본인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의점>

휴업 첫날로부터 3일째까지는 노재 보험으로부터의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업무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휴업보상(1일당 평균 임금의 6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복수 업무 원인 재해·통근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보상 책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효... 임금을 받지 않는 날별로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다음날로부터 2년

【상세사항은】 제2편

- 휴업(보상) 등 급부 → P16에
- 휴업(보상) 등 급부 청구서 → P41에

휴업(보상) 등 급부를 받기 위한 수속

노동재해 발생

청구서에 의사,
사업주의 증명

2회째 이하의
청구가 이직후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필요에 따라 청구
인 및 관계자에게
서류 제출이나
청취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 업무가 원인인 부상·질병인가 아닌가
- 휴업을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
- 보험 급부액의 산정 등

청구 접수로부터
급부결정까지의
기간은 대략
1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부지급 결정

청구인 본인에 대해서 지급(부지급) 결정의 통지

지정된 이체 계좌에
보험 급부를 지불

휴업(보상) 등 급부 지급
청구서(업무재해,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의 경우는 양식 제8호,
통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16호의6)

일이나 통근이 원인으로 친족이 사망한 경우

Q. 일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일가의 가장이 사망한 경우, 가족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① 유족(보상) 등 급부, 상제료 등(상제 급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② 요양(보상) 등 급부, 휴업(보상) 등 급부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액을 유족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급부, 유족(보상) 등 연금, 유족(보상) 등 일시금

<관련보험급부>
미지급의 보험급부·특별지급금,
노재취학보육원호비,노재취로보육원호비

○ 유족(보상) 등 연금

<청구할 수 있는 유족>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이지만 부인 이외의 유족에 대해서는 일정의 고령 또는 연소이거나 또는 일정의 장애 상태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내용>

수급 자격자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 대해서 유족 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유족수 | 유족(보상) 등 연금 | 유족특별지급금(일시금) | 유족특별연금 |
|-------|---|--------------|---|
| 1인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153일분(단, 그 유족이 55세 이상의 아내 혹은 일정 정도의 장애 상태인 아내의 경우는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175일분) | 300만원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153일분(단, 그 유족이 55세 이상의 아내 혹은 일정 정도의 장애 상태인 아내의 경우는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175일분) |
| 2인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201일분 |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201일분 |
| 3인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223일분 |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223일분 |
| 4인 이상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245일분 |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245일분 |

※산정 기초 일액에 관하여 → 제2편 P9로

<청구방법>

유족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유족(보상) 등 일시금

<지급요건·지급내용>

·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유족(보상) 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

→ 급부 기초 일당금액 1000일분, 유족특별지급금 300만원, 산정기초일당금액 1000일분이 사망한 노동자 친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됩니다.

· 유족(보상) 등 연금의 수급권자가 모두 없어졌을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 전원에 대해 지급 된 연금의 금액 및 유족(보상) 등 연금 사전 지불 일시금액수의 합계액이 급부 기초 일당금액 및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

→ 급부기초일당금액의 1000일분 및 산정기초일당금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 된 유족(보상) 등 연금 등의 합계금액을 뺀 액수가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청구방법>

유족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피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

【상세사항은】 제2편

- 유족(보상) 등 급부 → P26에
- 유족(보상) 등 급부 청구서 → P45에

유족(보상) 등 급부를 받기 위한 수속

노동재해 발생



노동자의 사망



사업주로부터
청구권에 증명을
받는다

<첨부 서류>

- 사망진단서
 -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초본·등본 등)
 - 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 등
- ※ 국가에 따라서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과의 혈연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유족이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노동기준감독서의 조사

- 사인이 업무상의 것인가 아닌가
- 수급권자의 확인
- 보험 급부액의 산정 등

※ 청구 접수로부터
급부 결정까지의
기간은 대략
4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개월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부지급 결정

청구인에 대해서 지급(부지급) 결정의
통지

- 유족(보상) 등 연금지급 청구서 (업무재해,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의 경우는 양식 제12호, 통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16호의 8)
- 유족(보상) 등 일시금 지급 청구서 (업무재해,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의 경우는 양식 15호, 통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16호의 9)

지정된 이체 계좌에
보험 급부 지불

※ 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제료 등(상제 급부)

<지급 요건>

유족이 상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노동자의 회사에서 사제를 하는 경우에 상제를 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내용>

- ① 315,000엔+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30일분
- ② ①의 금액이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6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60일분

<청구방법>

유족 등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피재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상제사항은】 제2편

- 상제료 등(상제 급부) → P32에
- 상제료 등(상제 급부) 청구서 → P49에

Q. 사망하기전 치료나 휴업을 하여 노재로 보험급부를 받을수 있는 분이 급부를 받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누군가 대신 받을수 있습니까?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망한 분에게

- ① 지급사유는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가 없는 보험급부
- ② 청구는 하였지만 아직 지급결정이 되지않은 보험급부
- ③ 지급결정은 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부

가 있을 경우 그 분의 유족에게 일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보험급부 및 특별지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의 보험급부)

미지급의 보험급부·특별지급금

<관련 보험급부>

요양(보상) 등 급부, 휴업(보상) 등 급부, 장해(보상) 등 급부, 상병(보상) 등 연금, 유족(보상) 등 급부

<청구 가능한 유족>

- ①과 ②의 양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① 사망한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 ②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당시 그 분과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있을 것(꼭 동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① ②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 등 연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유족...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차순위의 수급자격자(연금을 받았던 사람의 배우자 등은 아닙니다)

<청구방법>

유족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각각의 보험 급부와 동일함

이미 노재보험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Q. 치료를 위해서 언제까지 통원할 수 있습니까?



요양(보상) 등 급부는 상병이 치유(병상 고정)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을 경과해도 치유(증상 고정)되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상병(보상) 등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병(보상) 등 연금

<관련 보험급부> 개호(보상) 등 급부

<지급요건·지급내용>

법률로 정해진 상병 등급에 해당하며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 등 연금, 상병 특별 지급금 및 상병 특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 상병등급 | 상병(보상) 등 연금 | 상병특별지급금(일시금) | 상병특별연금 |
|------|-------------------|--------------|-------------------|
| 제1급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313일분 | 114만엔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313일분 |
| 제2급 | " 277일분 | 107만엔 | " 277일분 |
| 제3급 | " 245일분 | 100만엔 | " 245일분 |

<유의점>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직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Q. 완치하지 않았지만 치유(증상 고정)라고 판정받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노재보험에서는 치료해도 그 이상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치유(증상 고정)라고 합니다. 치유(증상 고정)라고 인정받아도 그 후에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보상) 등 급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보상) 등 급부

<관련 보험급부>

개호(보상) 등 급부, 외과후 처치, 애프터케어, 의지 등 보조장구의 비용 지급

<지급 요건·지급 내용>

근무중 또는 통근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증상 고정)된 때에 신체에 일정 장애가 남고 법령에서 정해진 장애 등급에 해당할 때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아래와 같이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 장애(보상) 등 급부 | | 장애특별지급금 | | 장애특별연금 | | 장애특별일시금 | | |
|------|-------------|-------------------|---------|-------|--------|-------------------|---------|--|-----|
| 1급 | 연금 | 급부 기초 일당금액의 313일분 | 일시금 | 342만엔 | 연금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313일분 | / | | |
| 2급 | | " 277일분 | | 320만엔 | | " 277일분 | | | |
| 3급 | | " 245일분 | | 300만엔 | | " 245일분 | | | |
| 4급 | | " 213일분 | | 264만엔 | | " 213일분 | | | |
| 5급 | | " 184일분 | | 225만엔 | | " 184일분 | | | |
| 6급 | | " 156일분 | | 192만엔 | | " 156일분 | | | |
| 7급 | | " 131일분 | | 159만엔 | | " 131일분 | | | |
| 8급 | 일시금 | " 503일분 | 65만엔 | | | 산정 기초 일당금액의 503일분 | | | 일시금 |
| 9급 | | " 391일분 | 50만엔 | | | " 391일분 | | | |
| 10급 | | " 302일분 | 39만엔 | | | " 302일분 | | | |
| 11급 | | " 223일분 | 29만엔 | | | " 223일분 | | | |
| 12급 | | " 156일분 | 20만엔 | | | " 156일분 | | | |
| 13급 | | " 101일분 | 14만엔 | | | " 101일분 | | | |
| 14급 | | " 56일분 | 8만엔 | | | " 56일분 | | | |

<청구 방법>

본인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

【상세사항은】 제2편

- 장애(보상) 등 급부 → P18에
- 장애(보상) 등 급부 청구서 → P43에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의 급부 수속

노동 재해 발생

요양

증상 고정

사업주로부터 청구서에
증명을 받는다

<첨부 서류>

○X선 사진 등
○동일한 사유에 의해 장애
후생 연금, 장애 기초 연금
등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청구서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증상 고정 및 장애
등급의 인정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의에 의한 증상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접수로부터 급부
결정까지의 기간은 대략
3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등급의 인정

본인에게 보험 급부 결정의 통지

장애(보상) 등 급부 지급 청구서
(업무재해, 복수 업무 원인
재해의 경우는 양식 제10호,
통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16호의
7)

지정된 이체 계좌로
보험 급부 지불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중증의 후유 장애에 의해 앞으로 가족이나 개호 서비스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개호(보상) 등 급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호(보상) 등 급부

<관련 보험 급부> 장애(보상) 등 급부, 상병(보상) 등 연금

<지급요건>

- ①~④의 모든 여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장애(보상) 등 연금 또는 병상(보상) 등 연금의 제1급 또는 제2급에서 고차 뇌기능 장애, 신체성 기능 장애 등의 장애를 남기고 상시 또는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분
- ② 민간의 유료 개호 서비스 등이나 친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현재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을 것
- ③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일 것
- ④ 개호 노인보건의설 등에 입소하지 않은 상태일 것

<지급내용>

지급액은 상시 개호, 수시 개호로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2024.3.1)

- 상시 개호: 월액 77,890엔~172,550엔
- 수시 개호: 월액 38,900엔~ 86,280엔

<청구방법>

본인이 직접 노동기준감독서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개호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년

| | | |
|-------------|-------------------|--------|
| 【상세사항은】 제2편 | · 개호(보상) 등 급부 | → P33에 |
| | · 개호(보상) 등 급부 청구서 | → P51에 |

그 외의 지원 제도

● 애프터케어

상병이 치유(증상 고정)된 후에도 후유 증상이 변화하거나 후유 장애에 부수하는 질병을 발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상병(20상병)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진료 등 진찰, 보건 지도 등을 일정 범위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진료 등에 들어간 통원비의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의지 등 보조장구의 비용 지급

장애(보상) 등 급부의 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의지 등 보조장구의 구입(수리)에 들어간 비용이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구입(수리)에 들어간 여비의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외과후 처리

장애(보상) 등 급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 노재병원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의지 장착을 위한 재수술, 추악상의 경감 등 상병 치유(증상 고정) 후에 실시하는 처치·진료를 자기 부담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처치·진료에 들어간 통원비의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노재취학 등 원호비

유족(보상) 등 연금 등의 수급자나 유족 아동이 학교 등에 다니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재취학 원호비 또는 노재취로 보육원호비)

그 외

- Q.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이번 사고는 노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력적이지 않으며 사업주 증명 등의 수속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A. 노재 보험 수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노재를 당하신 분이 스스로 가서 하면 문제없습니다. 회사가 사업주 증명을 거부하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증명이 없어도 노재 보험의 청구서는 수리됩니다.

- Q. 꽤 오래 전에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노재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A. 각 보험 급부마다 정해져 있는 시효가 지나버리면 급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급부 항목에 시효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 Q. 퇴직해버렸거나 이미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도 노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A. 그런 상황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나 회사 동료의 주소 및 성명을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Q.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노재보험 급부를 받을수 있습니까?
①노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②노재보험이 아닌 보험의 적용이 있다.
- A. ①회사가 노재보험 가입수속을 하지 않았어도 원칙 적으로 근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처나 질병을 얻었을 때에는 급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 ②회사 또는 단체가 가입한 임의보험 등이 적용 될 경우에도 노재로부터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 회사로부터 보상(치료비의 지급, 휴업보상, 손해보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K감액 될 경우가 있습니다.

- Q. 아래와 같은 경우 노재보험으로부터 급부를 받을수 있습니까?
 ① 통근중 자전거와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② 예전과 다른 길로 회사 통근 중 상처를 입었습니다
- A. ①노재보험으로부터 급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②일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보험급부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통근재해에 관하여

통근 재해란 「통근」에 따른 노동자의 상병 등을 말합니다.

「통근」이란 노동자가 취업에 관한 ①~③의 이동을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적인 성질을 띠는 이동은 제외합니다.

- ①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왕복
- ②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취업 장소로부터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복수 취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을 가리킨다.)
- ③ ①에 설명한 왕복에 선행 또는 후속하는 이동(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지급내용>

업무재해·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와 동일함
 (휴업 보상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금으로써 급부액으로부터 200엔이 공제됩니다.)

<청구방법>

업무재해·복수 업무 원인 재해인 경우와 동일함
 첨부 서류: 사고 증명서(교통사고인 경우) 등

【상세사항은】 제2편 • 통근재해 → P6에

- Q. 통근중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노재 보험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그런 경우에도 노재 보험 급부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휴업한 경우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 지급금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으로부터의 지불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의 주의사항

<일본이외로부터 청구하는 경우의 취급>

보험급부금액

지급액은 지급 결정일에 있어서의 외환 환산률(매각률)로 환산한 일본 엔화로 됩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 대상으로 됩니다.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지급됩니다.)

일본 국내에 한정된 주요 지원제도

- 애프터케어
- 의지 등 보조장구비의 지급(휠체어 등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외과후처리
- 노재취학 등 원호비(일본 국내의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경우로 한합니다.)

→P13에